
DA같이사는집 구로 입주자 모집 공고 (4차)



대학 비진학자의 주거빈곤, 사회적고립을 해소하는 다다다협동조합의 <DA같이사는집 구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대학 비진학자를 위한 셰어하우스 <DA같이사는집 구로>는 다다다협동조합 조합원들과 한국사회주택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거비부담을 낮추고, 다 같이 살기 위한 방법을 찾아갑니다DA!

2023. 10. 05.

다다다협동조합

1. DA같이사는집 구로 소개

○ 주택 위치: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구로보건소 인근, 구로역 도보 10분)

- 입주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상세주소는 온라인에 공개하지 않으며, 주택탐방 및 거꾸로면접 대상이 되는 입주신청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소를 안내해드립니다.

○ 주택 유형: 셰어하우스 (1인실 사용, 주방/거실/화장실 공유)

- 다세대 2층 건물을 함께 사용 합니다 (전체 입주인원: 6~7명)
- 옵션: (개인실) 에어컨, 침대, 도어락, 수납가구 / (공유공간) 식탁, 전자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 <DA같이사는집-구로>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젠더프리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성소수자도 배제되지 않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성별이 함께 생활 할 수 있도록 1인실 및 성중립 1인화장실로 운영되며, 차별에 반대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DA같이사는집 구로 자치규약>을 함께 제정하였습니다. 신청 전 [참고5]에 자치규약을 꼼꼼히 읽어봐주세요~

*자치규약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거나 고민되는 내용은 거꾸로면접때 편하게 질문해주세요

○ 4차모집 내용

- 모집인원: 1명
- 공급호수: 1층 101호, 102호 (적정주거면적을 고려하여 1인이 작은방 2개를 사용합니다)

○ 입주가능기간: 약8개월 (2023년 10월 ~ 2024년 6월 30일)

- 건물 재계약이 연장 될 경우 입주 가능 기간이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재계약이 연장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함께 돕습니다.

○ 4차모집 주요 일정

- (1차 서류심사) 신청서 제출마감 : 10/21(토)
- (2차 대면심사) 주택탐방 및 거꾸로면접: 모집기간 동안 상시 (세부 일정 대상자와 협의)
- 선발 공고: 10/23(월)
- 사전 오리엔테이션: 최종 선발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10월말 중 진행 (일정 협의)
- 입주: 오리엔테이션 및 조합가입이 완료되면 10월말부터 가능

2. 임대료 안내

○ 임대료 (기본 임대료)

보증금		1,000,000원 (백만원)
월세	현금임대료	330,000원 (삼십삼만원) / 1인가구 주거급여 수준(2023)
	참여형임대료	△월 1회 입주민회의 참석 △역할 분담한 집 청소 및 분리배출 당번 참여 △다같이사는법 과제 찾기 연구 참여(다다다와 인터뷰데이트, 평가회의) △퇴거 시 다다다협동조합 사무국과 배웅인터뷰 참여

*공과금(인터넷, 전기, 수도, 가스)은 월세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입주민의 생활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관리비는 없습니다.

○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

- 보증금 목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사회주택협회의와 협업을 통해 주거취약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동료시민들의 후원, 사회연대를 통해 주거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사업	지원내용	최대 신청 가능 금액	신청 가능 조건
보증금 대출지원	당장 보증금이 없어도 안정적 주거를 마련 할 수 있도록, 사회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주택협회와 협업으로 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자 연3%)	1,000,000 원 (백만원)	보증금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 (신용점수 무관)
월세 지원	기본 임대료 중 월 10만원을 한국사회주택협회에서 <주거 취약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주택 입주민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후원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8개월)	월 100,000 원 (십만원)	[참고3]가점사항에 해당하는 취약 상황이지만 가족 또는 공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

- 청년월세지원,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공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청년분에게는 공공지원 연계를 다다다협동조합이 동행(지원)합니다. 후원으로 운영되는 작은 규모의 지원사업인 관계로 공공지원과 중복신청은 어렵습니다. 공공지원을 받기 어려운 다른 동료시민에게 양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종 지원 가능 여부는 '주택탐방 및 거꾸로면접(2차대면심사)'에서 함께 상의 한 후에 선발공고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입주 자격 및 모집 안내

○ 입주신청자격

- 1순위: 대학 비진학청년 (초졸, 중졸, 고졸 등 / 학력인정과 별도로 운영되는 대안대학 포함)
- 2순위: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재/졸학생 (공공임대주택 대학생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
- 3순위: 기타 (전문대학교, 4년제 대학교 이상 등)

○ 입주자 가점 사항 안내 : 다양한 우리의 삶에 연대합니다 (세부사항은 [참고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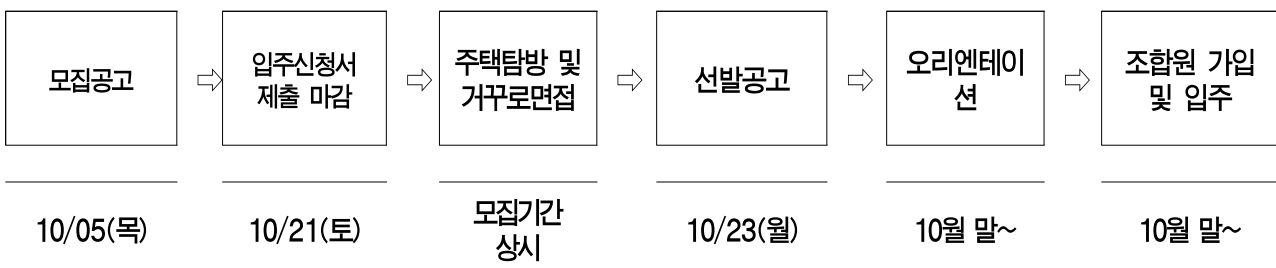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신청서류에 체크해주시면, 입주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가점 항목	내용
다다다협동조합 활동 경험	다다다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
사회적 활동 경험	지역·시민·사회·문화·공익 기관, 단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임의단체, 지역동아리 포함)
주거 취약상황	공고일 현재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 거주(고시원 등)
경제 취약상황	공고일 현재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 거주(고시원 등)
시설이용 경험자	쉼터, 자립지원시설, 상담소 등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종료 아동, 가정밖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장기실업자 등
제도권밖 탈가정 청소년 및 청년	가정 및 공공지원(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 입주 신청 방법

- (1차: 서류) 온라인으로 입주신청서 작성: <https://ddd.or.kr/4>
*입주신청서를 기반으로 모집기간동안 4일에 한번씩, 결과(2차 대상자여부)를 상시 전달 드립니다.
- (2차: 대면) 서류 통과자 대상으로 주택탐방 및 거꾸로면접이 진행됩니다. 일정은 입주신청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주소는 개별적으로 안내 드립니다.
- 관련 증빙서류: 신청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종 선정 이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입주자 선정 절차



○ 입주자 사전 오리엔테이션

- 날짜: 선발공고 이후 10월말중 가능한 날 협의 (2023년 10월 23일(월)~31일(화) 사이)
- 시간 예비입주자가 가능한 시간으로 협의 (약 1시간30분~2시간 진행)
- 장소: 다다다협동조합 모임방 (영등포구청역 근처,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13 2층)
- 오리엔테이션은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들을 나누고, 입주민들이 함께 토론하여 만든 <DA같이사는집 구로 자치규약>을 공유하는 등 중요한 자리로 **필수 참석**이 필요합니다.

4. 선정이후 제출 서류 안내

- **두려워하지 마세요. 입주 선정 이후 다다다협동조합 활동가와 함께 필요서류 발급을 진행합니다.**
- 가점을 신청한 항목들은 서류를 발급 및 제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보증금 대출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분들은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제작이 필요합니다.

항목		내용
공 통	비진학 관련 서류	◎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조합서식) ◎ 최종 학력에 대한 확인서 (조합서식) ◎ 방통대 등의 경우: 재학증명서
사 회 연 대	지원사업 관련 서류 (보증금대출)	◎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혹은 과세증명서 및 사유서(다다다협동조합 양식))
가 점	사회적 활동 경험	◎ 활동증명서 (자체양식 또는 다다다협동조합 양식)
	주거 취약상황	◎ 주거거주 확인서류 (고시원 입실계약서 등) ◎ 확인서류가 어려울 경우: 미팅 이후 자기확인서(조합서식)
	경제 취약상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 확인서류가 어려울 경우: 미팅 이후 자기확인서(조합서식)
	시설이용 경험자	◎ 시설 이용 및 퇴소 확인서류 (기관양식 또는 다다다협동조합 양식)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	◎ 유형에 따라 서류 별도 안내
	제도권 밖 탈가정 청소년 및 청년	◎ 상담소, 일시쉼터, 자립지원시설 등 이용 확인서류 (기관양식 또는 다다다협동조합 양식) ◎ 확인서류가 어려울 경우: 미팅 이후 자기확인서(조합서식)

[참고1] DA같이사는집 구로 대략적인 위치

#구로역_도보10분 #거리공원_산책 #구로보건소_보건증 #하나로마트_생활비절약 #구로도서관



[참고2] DA같이사는집 구로 주요 실내이미지

현재는 입주민들이 지내고 있는 관계로 사진 촬영이 어려워 과거에 촬영한 사진들을 참고용으로 보여드립니다. 시설이 일부 변경 되어 있으며, 주택탐방에서 직접 주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DA!



주방 (공유)



방 (개인)



욕실 (공유)

층수	공급호수	입주인원	층별 구조 (참고용)
1층	6호	4명	Detailed description of the floor plan: The plan shows a vertical corridor on the left with units 101, 102, 103, 104, and 105. Unit 106 is located to the right of unit 105. A kitchen area (KITCHEN(0.5층)) is located to the right of unit 104. Stairs lead up (UP) and down (DN) from the kitchen area. Dimensions are provided for various rooms and corridors. - Unit 101: 0.95m wide, 2.41m deep. - Unit 102: 0.95m wide, 2.41m deep. - Unit 103: 2.32m wide, 2.31m deep. - Unit 104: 2.92m wide, 3.11m deep. - Unit 105: 2.41m wide, 2.14m deep. - Unit 106: 2.41m wide, 2.09m deep. - Kitchen area: 4.97m wide, 3.33m deep. - Corridor: 1.9m wide. - Stairs: 2.14m wide.

층수	공급호수	입주인원	층별 구조 (참고용)
2층	4호	2~3명	

[참고3] 입주자 선정 평가 기준 안내

□ 1차 서류심사: 정량평가

- 입주신청서를 기반으로 모집기간동안 **4일에 한번씩, 결과(2차 대상자여부)를 상시 전달** 드립니다

평가항목	기준	배점	합계
대학 비진학 여부	대학 비진학자	50점	50점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30점	
	전문대학·산업대학 및 기술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20점	
	4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10점	
다다다협동조합 활동 경험	조합원 가입기간 2개월에 1점	0점~5점	5점
사회적 활동 경험	누적 활동 기간 합계 2개월에 1점	0점~5점	5점
주거 취약상황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 거주(고시원 등)	10점	10점
경제 취약상황	4대보험 미가입 노동 또는 실업상태	10점	10점
별도가점	4개 해당	20점	20점
	3개 해당	15점	
	2개 해당	10점	
	1개 해당	5점	
합계			100점

*사회적 활동 : 지역·시민·사회·문화·공익 기관 및 단체(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 및 지역동아리 포함), 사회적경제조직, 노동조합 활동기간 (중복 가능)

*별도가점 : 자동차 무소유 / 시설(쉼터, 상담소 포함) 이용 경험자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보호종료아동, 가정밖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장기실업자 등) / 공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도권밖 탈가정 청소년 및 청년

□ 2차 대면심사(거꾸로면접): 정성평가

- 1차 서류 통과자를 대상으로 주택탐방과 함께 거꾸로면접 방식의 대면심사를 진행합니다.
- 입주희망자가 다다다협동조합, 쉼터하우스, 공동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다다다협동조합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
- 심사기준: 주거상황 등 주거지원 긴급성, 사회적고립 상황 등 공동생활 필요성, 가정 및 경쟁상황 등 독립지원 필요성

[참고4] DA같이사는집 구로 자치규약

원안 작성일: 2022.07.01.

최종 수정일: 2022.09.27.

1. 관계와 신뢰에 관한 약속

제1조(반폭력)

DA같이사는집 구로의 구성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리적(폭행과 같이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때리는 등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해를 가하거나 기물 파손 등 물리적 수단을 사용해 걸으로 드러나는 폭력), 정서적(욕설과 같은 폭언, 집단적 괴롭힘, 걸으로 드러나지 않는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폭력들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감정, 존엄성 등 정서에 가하는 폭력), 구조적 폭력(성차별, 장애인 차별 등 이 사회의 여러 차별과 부조리로 인해 발생하는 배제, 혐오 발언 등의 각종 폭력)이 공동체와 개인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폭력이 발생하고 악화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반차별)

DA같이사는집 구로의 구성원은 방의 배치, 돌봄노동의 분담, 커뮤니티 활동을 비롯한 공동체 생활 전반에서 성별, 성적지향, 성정체성, 연령,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학벌, 출신학교, 병역사항, 혼인·임신·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양성)

DA같이사는집 구로의 구성원은 다양한 삶, 다양한 선택, 다양한 사람들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존중한다. 단, 구성원의 선택과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경우 서로를 돌보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제4조(상호 인정)

DA같이사는집 구로의 구성원은 나에게 당연한 지식과 경험이 다른 이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음을 늘 생각하며 행동한다.

제5조(중재)

DA같이사는집 구로의 입주민에게 서로의 관계와 신뢰를 해치는 갈등이 발생하여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사안을 다다다협동조합 커뮤니티 매니저에게 설명하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2. 커뮤니티 운영에 관한 약속

제6조(입주민 회의 운영)

(1) DA같이사는집 구로의 입주민과 다다다 협동조합의 커뮤니티 매니저는 월 1회 입주민 회의를 열어 생활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2) DA같이사는집 구로의 모든 입주민은 매월 입주민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입주민이 입주민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불참의 결과는 입주 계약서의 계약사항에 따라 판단한다.

제7조(커뮤니티 활동)

DA같이사는집 구로의 모든 입주민은 상호 교류를 위해 입주민이 직접 기획하거나 다다다 협동조합 사무국이 준비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고자 노력한다.

제8조(손님 초대)

(1) DA같이사는집 구로의 모든 입주민은 DA같이사는집 구로에 손님을 초대할 수 있다.

(2) DA같이사는집 구로의 모든 입주민은 다른 입주민이 DA같이사는집 구로에 외부인을 초대할 경우 사유를 명확히 밝히며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손님을 초대한 입주민은 다른 입주민의 거부 의사를 우선시해야 한다.

(3) DA같이사는집 구로에 손님을 초대한 입주민은 DA같이사는집 구로 자치규약의 내용을 손님 역시 인지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1회 이상 안내해야 한다.

(4) DA같이사는집 구로의 입주민이 외부인을 초대하고자 할 경우, 손님이 방문하기 최소 1시간 전 다른 입주민들에게 손님을 초대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5) 위 제7조 4항은 손님 1인 초대를 기준으로 하며, 2인 이상을 초대하고자 할 경우 손님들이 DA같이사는집 구로에 방문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다른 입주민들과 손님 초대에 대해 논의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9조(반려동물)

DA같이사는집 구로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자 하는 입주민은 입주민 회의에서 반려동물과의 거주에 관해 사전에 함께 논의해야 하며, 논의 결과에 따라 반려동물과의 거주 여부를 결정한다.

3. 돌봄노동에 관한 약속

제10조(설거지)

DA같이사는집 구로에서 설거지는 가급적 식후 즉시 한다.

제11조(빨래)

서로의 쾌적한 수면을 위해 DA같이사는집 구로에서 세탁기를 이용한 빨래는 많은 입주민들이 잠드는 심야 및 새벽 시간대를 피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 할 수 있다.

제12조(청소)

(1) DA같이사는집 구로의 모든 입주민은 공동사용공간 청소와 대청소에 참여하여야 한다.

(2) DA같이사는집 구로의 공동사용공간 청소는 인원을 나눠 월 2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DA같이사는집 구로의 공동사용공간 및 마당을 포함한 구역의 대청소는 반기(6개월)당 1회를 원칙으로 한다.

(4) DA같이사는집 구로의 공동사용공간 청소와 공동사용공간 및 마당을 포함한 구역에 대한 대청소의 일시는 입주민 회의에서 정한다.

제13조(쓰레기 배출)

(1) DA같이사는집 구로의 쓰레기는 항상 분리배출한다.

(2) DA같이사는집 구로의 매월 쓰레기 배출 당번은 입주민 회의에서 정한다.